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27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태국: OECD 의 BEPS 2.0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의 입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 개시

2023 년 3 월 7 일, 태국 내각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서 발행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모델규정(Pillar 2)의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이 발의한 원칙적인 시행방안들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태국은 2021 년 BEPS 2.0 지침에 따라 국제조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138 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침은 Pillar 1 과 Pillar 2 로 구분됩니다. Pillar 1 은 회사가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객이 위치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Pillar 1 의 경우, 금번에 태국 내각이 승인한 시행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내각이 승인한 Pillar 2 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운영되는 각 국가에서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OECD 에서 발행한 산출규칙에 따라 계산된 해당 국가의 유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Top-Up Tax)이 과세됩니다. Pillar 2 는 그룹의 연결매출이 7 억 5 천만 유로(약 1 조원)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태국 내각의 입장 - 주요 내용]

1. 태국 투자청(BOI)이 금번 발의한 시행방안은 태국의 투자 유치 능력을 유지하고 자국에 위치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설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태국 투자청(BOI)은 이를 통해 투자촉진을 위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OECD가 새롭게 제안하는 과세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BEPS에 대한 OECD 공조체계(Inclusive Framework)는 각 멤버국들이 anti-BEPS 방침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성과 수단을 결정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은 2017년 6월에 BEPS에 관한 OECD 공조체계의 멤버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8일에 개최된 제13차 BEPS에 관한 OECD 공조체계 회의에서 OECD는 2개의 Pillar를 중심으로 한 규정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국 국세청은 추가세액(Top-up Tax)를 과세하기 위한 입법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해당 입법안은 2023년 내에 발표되어 승인을 득한 후 2025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KPMG 의견]

Pillar 2는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 기업에 전반적인 세무 이슈를 야기함.

- 1) 만일 Pillar 2를 이미 2024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확정된 타국가에 그룹 내 기업이 위치한 경우, 태국이 Pillar 2를 입법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 따라서 태국에 최종모기업이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들은 가능한 한 빨리 세무 위험진단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최종모기업이 태국이 아닌 타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다국적 그룹의 경우, 태국 투자청(BOI)이 현재 발의한 투자촉진 규정에 대한 잠재적인 업데이트 내용과 Pillar 2로 인해 태국 납부세액에 대한 변동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또한 Pillar 2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 그룹은 Pillar 2 관련 산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기존 ERP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함.

베트남: 2023 년 세무조사 및 세무감사 지침 발간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공식서한 10039/BTC-TTr 호 (2022 년 10 월 3 일) 상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및 세무감사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조세 및 관세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에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 이전가격, 탈세 및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허위로 신고된 세무신고서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세수 손실을 유발하는 정책 관련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환급액이 큰 납세자와 불법 청구서 사용 내역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강화
- 정보 기술 및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청구서 사용 내역 대사, 조사 및 관리
-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미납세액 관리, 조세 · 수수료 및 기타 세외수입 징수 실시

또한 베트남 국세청은 산하 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2023 년 세무조사 및 세무감사 수검 대상 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주요 재화의 수입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회사 및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와 금액적인 측면에서 법 준수에 취약한 재화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대해 관세 및 조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와 조사 강화
- 투자 인센티브 적용 산업 내 관세 면제 수혜 회사, 기계 및 장비 수입 회사, 광물 및 광물을 원재료로 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회사, 세금 환급 금액이 급증한 수출 회사에 대한 심사 및 조사 강화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중 2207, 2023.02.08

제목: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 등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6~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 AAA(이하 “스위스법인”)로부터 000시스템(이하 “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외거래처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원재료 등의 매입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동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2021.12.9. 거부처분
- 이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2) 쟁점

-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경우 저작물(권리)의 양수 또는 사용 대가가 아닌 부품(원재료)의 매입 대가와 그 실질이 같으므로 <u>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u>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단순 원재료의 도입으로 보려면 소프트웨어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서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는 구매하는 형식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셋톱박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사양을 스위스법인에 전달하면 스위스법인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등을 조정하여 다시 청구법인에 전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기초로 인증용 셋톱박스를 제작하여 스위스법인에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단계”를 거치는 것은 스위스법인이 단순히 원재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의 축적된 기술을 이용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결국 사용료소득에 해당
1)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주석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하는 수준인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청구법인의 쟁점소프트웨어 도입은 방송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쟁점소프트웨어를 스위스 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STB에 설치할	

<p>뿐이므로 그 성격이 특정 부품(원재료)을 구매하여 탑재한 것과 실질이 동일</p>	
<p>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비롯한 어떠한 노하우도 전수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소프트웨어 도입 및 STB 로의 탑재 과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받은 바가 없어 그 실질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바,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p> <p>1) 이 건 쟁점 소프트웨어는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볼 수 없음</p> <p>2) 쟁점소프트웨어는 일종의 범용소프트웨어에 해당하고, 고객화로 인하여 쟁점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기능에 변화가 생기거나 청구법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기능이 탑재되지 아니하고, 이 건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제작된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p>	<p>하기 사유로 쟁점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p> <p>1) 일반에 공개된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히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p> <p>2)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탑재하는 과정에서 스위스법인의 인증 과정을 거친다는 점,</p> <p>3) 다운로드 건당 지급하는 대가 이외에 연간 고정료로 지급하는 대가가 존재한다는 점,</p> <p>4) <u>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고 제조원가명세서 상 셋톱박스의 원재료 비용이 아닌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한 점</u></p> <p>5)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계약이 원재료의 구입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으로 체결된 점</p>

4) 쟁점

-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STB에 설치할 뿐이어서 그 성격이 특정 부품(원재료)을 구매하여 탑재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며,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음으로써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쟁점소프트웨어는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서 범용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쟁점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계약이 원재료의 구입이 아닌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고 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회계처리 계정의 항목이 항상 그 실질을 그대로 표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성격을 단순히 제품의 수입, 판매 대금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충분한바 (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068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소프트웨어 도입 및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인증용 셋톱박스를 제작하여 스위스법인에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단계가 있고,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의 STB 내 하드웨어 등과 호환될 수 있게끔 하는 고객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03 관세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23.03.17)

1) 배경

-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순수공급장치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
- 이에 따라 3월 20일(월) 수입건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가 생략됨

2) 사후관리제도 및 초순수공급장치

- 사후관리 : 수입자가 특정 용도(예: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
- 초순수공급장치 :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이하) 필수 공업용수이며, 초순수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를 의미

3) 주요 내용

-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구분		내용
대상물품	품목번호(HSK)	8421.21-9020
	물품명	액체용의 여과기 청정기
개선내용	별표 변경 (별표 1 가 → 별표 1 나)	(중전) 용도세율 O, 사후관리 O (개선) 용도세율 O, 사후관리 X
	시행일	2023.03.20(월)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

- 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

구분	사후관리 대상	사후관리 '생략'
물품	종자용 옥수수, 엔진부분품, 배터리충전기 등 269 종	나프타제조용 석유,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 종
특성	범용성(汎用)이 있는 물품 (다른 용도 사용가능성 ↑)	전용성(專用性)이 강한 물품 (본래 용도에만 사용될 가능성 ↑)
판단	물품 특성, 시장 동향, 과거 이력, 현장 점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전환사례 (대상 → 생략)	사료용 알팔파(목초)에 대해 한국사료협회 등 업계 요청이 있어, 물품 특성, 과거 지정 이력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생략('20 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02.28)

1) 개정사유

- 오류점수 부과면제 대상 확대,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추가 등 성실신고 지원 및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 위한 규정 정비
-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를 정비 등 개선 건의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보안을 위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관련 조항	상세
▸ 사유서 의무 제출 규정 삭제 (제 4 조)	신고서의 정정·취하 신청 시 신고인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적 제출근거가 없는 사유서 필수제출 규정 삭제 * (현행)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개정)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
▸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제 4 조 등)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전면 면제 * (현행) 심사(질의)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의 자발적 정정 유도 및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 (현행) FTA C/O 발급일로부터 30 일 이내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 (개정) 정정 일자와 관계없이 FTA C/O 발급여부 정정건 모두 오류점수 면제 ACVA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p>▶ 오류점수 부과 기준 완화 (제 8 조)</p>	<p>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 점으로 하향 적용</p> <p>* (현행) 부과규정 없이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란 추가·삭제와 동일점수 부과</p> <p>1 회 정정만으로 신고 제재 대상이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제재의 최저수준(500 점)으로 설정·추가</p> <p>* 오류점수가 500 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5% 상향 적용</p>
<p>▶ 오류점수 확정 과정의 절차 정비 (제 8 조)</p>	<p>부과 보류된 오류점수를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확정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p> <p>* (현행) 전분기 오류점수에 가산 → (개정) 확정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p>

[KPMG 의견]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사후관리 생략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체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인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도 부과되었던 오류점수가 전면 면제되는 등 업체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일정 오류 점수 초과시 부과되는 불이익(P/L 제재, 검사비율 상향) 때문에 정정을 회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